

산재 청구에 관한 유용한 정보



Workers'
Compensation
Board

근로자 산재 보상은 취업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겪고 있는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손실 임금에 대한 수당을 지불합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1.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의료 제공자에게 근무 도중 부상을 당했다고 말씀하십시오.
2. 귀하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 알려십시오. 부상을 입은 후 30일 이내에 알려시기 바랍니다.
3. 부상/질병을 보고하는 직원 청구서(C-3 양식)를 산재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가능한 빨리 접수하십시오. 청구서는 상해/질병 발생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고용주도 사건을 보고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보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같은 부위를 부상을 당한 적이 있거나 비슷한 부상을 입은 적이 있으면 건강 정보의 제한적 공개(C-3.3 양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원 청구서 작성(C-3 양식)

wcb.ny.gov를 방문하여 **File a Claim**을 선택하십시오.

C-3 양식은 고용주 및 근로자 산재 보상 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cb.ny.gov)에서 구할 수 있으며,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다음 주소로 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NYS Workers' Compensation Board
PO Box 5205
Binghamton, NY 13902-5205

청구를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877) 632-49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의료 서비스

일반적으로, NYS 산재 클리닉(NYS Occupational Health Clinic) 네트워크 등 위원회에서 승인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근로자 산재 보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대 제공자 기관(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 네트워크가 있다면 PPO 네트워크에서 초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약국이나 진단 검사 네트워크도 운영할 경우, 이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자 네트워크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 보상 치료, 약물 치료 또는 처방된 장비에 대해 자기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당사자가 청구를 원하거나 위원회에서 해당 청구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면 근로자 산재 보상 보험사에서 이 청구서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또는 일반 의료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위원회 홈페이지(wcb.ny.gov)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진료에 문제가 있거나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료 팀장실(Office of the Medical Director) (800) 781-236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여행 및 기타 경비

치료를 위해 이동하는 데 발생한 주유비, 대중교통비 또는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청구인 의료 및 교통비 기록 및 환급 요청(C-257 양식)에 대하여 적어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해당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위원회와 보험사에게 제출하십시오.

손실 임금 수당

보험사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면 즉시 손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상으로 인해 7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 신체 일부에 영구 장애를 입었을 경우.
- 이제 부상으로 인해 전보다 적게 일하거나 다른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받는 임금도 액수가 줄어 들었을 경우.

심리가 진행될 경우

수당은 자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가 필요합니다. 심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로부터 심리에 대한 사유, 장소,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는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위원회로부터 수령한 모든 우편물을 검토하고 안내에 따라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 사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해당 청구는 어떤 관점이든 변호사 또는 인가된 대리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분쟁을 일으킨 복잡한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청구 문제에 대해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인은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비용은 손실 임금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심리에 출석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률 자문이나 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심리는 전화로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 출석할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위원회에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십시오.

청구 이의 제기 시

간혹, 보험사에서는 청구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험사는 당사자가 직업 관련 상해를 입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 고용주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이의 제기 시 위원회는 심리를 갖습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담당 판사는 당사자의 의료 기록, 임금 및 기타 증거 및 증언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은 문제를 결정하고 급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당사자 또는 해당 고용주의 보험사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위원회 구성원들은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동의하거나, 이를 변경하거나 거부합니다. 이들은 더 많은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케이스를 심리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을 신청하려면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수당 청구 통지 및 증명서(DB-450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하거나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승소로 근로자 산재 보상 청구 문제가 해결되면 장애인 수당은 손실 임금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청구 일정

치료: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부상을 입은 지 15일이 지나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지속적인 손실 시간이 있다면 90일마다 한 번씩 진찰을 받으십시오.

임금 대체: 장애를 입었고 해당 케이스가 수락되었다면 사고 발생 후 18일 이내 또는 운송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청구액이 지급됩니다. 해당 케이스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당사자는 해당 청구를 판결하기 위한 심리를 갖게 됩니다.

언어 지원

위원회는 당사자가 필요하는 언어로 서류를 번역합니다. 심리 때에는 언제든지 무료 통역사도 제공됩니다. 번역 또는 통역 서비스를 받으려면 **(877) 632-49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면 때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 대안 업무나 과중하지 않은 업무가 있다면 근로자가 회복하는 동안 근로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가족 또는 재정 문제를 겪거나, 업무 복귀를 위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근로 복귀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위원회에 전화하여 알아보십시오.

홈페이지: wcb.ny.gov

전화: (877) 632-4996

이메일: General_Information@wcb.ny.gov

뉴욕 주 산재보상 위원회는 부상을 당하거나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이 적절히 지급되도록 하고 법규의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산재 보상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cb.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